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 과정에서 친부모의 경험 연구*

김 주 현

(경희사이버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보호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친부모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친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후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과적 조건은 '자녀를 맡김'이 도출되었고, 현상은 '형벌같은 삶', '자녀와의 분리상황에 적응함'으로 나타났다. 이에 맥락적 조건은 '가족 신념', '자녀양육 신념'이며, 중재적 조건은 '재기할 힘', '뜻대로 안됨'이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양육기반 마련하기', '부모 역할 지속하기', '적응에 저항하기', '자녀복귀시기 조정하기'로 나타났다. 결과로는 '돌봄 부담감', '말기고 싶음', '가족의식 강화됨', '미래가 희망적임'이 도출되었다. 과정분석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① 자녀위탁단계: 자녀를 위탁한 모친 부모가 됨, ② 자녀 위탁 후 단계: 자녀복귀위해 무너진 가정세움, ③ 자녀 친가정 복귀 단계: 나, 가족, 세상에 떳떳함 ④ 자녀 친가정 복귀 이후 단계: 재위탁 경계하며 가정지킴으로 구분되었고 보호아동의 친부모들은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보호아동, 친가정 복귀, 근거이론방법

1. 서론

사회경제적 위기, 이혼과 별거의 증가, 부모의 실직과 사망 등은 가족기능을 약화시키거나 기능상실을 초래하여 급기야 가족해체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과 맞물려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양쪽 또는 한쪽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예방은 매우 중요

* 본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32-B00264)

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가 2008년 9,284명으로 10년 전 9,292명(1998년)으로 조사된 이후로 대략 1만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 아동인구가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오히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더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시설보호아동의 89.4%가 부모 있는 아동이라는 것(정영순, 2000)과 가정위탁보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친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이 57.4%나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07)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사회적 보호를 받는 아동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아동보호의 목적 중의 하나는 다양한 아동보호의 형태를 막론하고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친가정 복귀(정익중, 2009)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종결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율이 17.4%에 불과하다. 이것은 미국의 가정위탁보호아동의 50% 이상이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U.S. DHHS, 2005; Wulczyn, 2004)에 비해 비교적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친가정 복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는 친부모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접촉인데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두 영역에서 부모가 생존해 있는 아동의 41.8%(변용찬, 이상현, 1998), 57.4%(보건복지부, 2007)가 친부모와의 접촉이 단절되어 결국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의 수는 앞으로도 필연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예측하였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절대적인 요인으로써 가족환경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아동보호형태에 반영되어 있다. 대규모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의 형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보고된 이후로 시설보호의 비율이 점차로 감소하게 되었고 가정보호우선의 원칙에 근거한 가정위탁보호형태를 확대·적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보건복지부, 2007)에 관한 보고서와 김경민, 정익중(2009)의 조사에서 친부모에 대한 서비스 개입의 부재, 친권의 개입이나 제한과 관련된 규정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위탁양육 이후에 가능하면 속히 친가정으로 복귀되도록 집중적인 가족기능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아동보호의 형태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개입차원에서는 가족중심이기보다는 아동중심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친가정 복귀를 도모하는 궁극적 목적이 간과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개입계획이나 실천은 이와 관련된 연구를 기본 토대로 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 보호를 받는 아동의 친가정 복귀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이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천적 영역에서 친가정 복귀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는 80년대부터 보호아동이 친가정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하는데 관련 요인을 밝히는 연구(Marm and Zielewski, 2009; Hines, Lee, Osterling, & Drabble, 2007; Wulczyn, 2004; Children's Bureau, 2003; Smith, 2003; Glisson, Bailey and Post, 2000; Jones, 1998; Festinger, 1996; Courtney, 1995; Littell, and Schuerman, 1995)들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친가족에 대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친가정 복귀와 관련된 연구는 친가정 복귀의 필요

성, 가정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와 관련된 실태조사들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이며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정영순(2000)은 부모 있는 시설보호아동의 가족재결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2007)에서는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부로서 아동의 친부모를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위탁아동의 변화, 위탁양육 관련사항, 귀가 준비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정익중(2009)은 가정위탁 내 친가정 복귀에 관한 실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미 10년 전부터 친가정 복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관련 연구나 서비스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친가정 복귀 실태조사도 아동보호형태 중 가정위탁에 한정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친가정 복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는 단지 아동이 사회적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성공적인 결과이기 보다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단계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익중(2009)은 친가정 복귀가 가족에게 중요한 성공이긴 하지만 또 다른 재적응 시기이며 이미 스트레스를 경험한 가족은 이 때 안전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1990년에 친가정으로 돌아간 보호아동의 30%가 재결합에 실패하여 10년 안에 다시 위탁보호로 되돌아왔다고 보고(Wulczyn, 2004)하였다. 따라서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가족중심적 서비스 관점에서 보호아동의 성공적인 친가정 복귀를 돕는 구체적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가정 복귀과정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근거이론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보호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재결합과정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보호아동 양육의 주 책임자이고 가족재결합과정의 주도적인 참여자인 친부모가 어떤 상황적 조건하에서 주변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가족재결합을 선택하는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부모-자녀간 재결합 이후의 삶의 경험은 어떠한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1)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 현황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는 최근 들어 가정위탁보호 영역에서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가정위탁 통합전산망(2008년)에 등록된 가정위탁아동의 종결현황을 살펴보면, 친가정 복귀가 439명(17.4%), 시설, 그룹홈 입소가 56명(2.2%), 입양이 8명(0.3%), 18세 이상으로 보호종결되는 위탁아동이 1,210명(47.9%), 위탁가정의 종결요구에 의한 종결이 25명(1.0%), 기타 사유가 788명(31.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친가정 복귀를 통한 종결이 17.4%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가정위탁에서 종결된 아동의 50% 이상이 부모나 주요 양육자에게 되돌아가 재결합되는 것

(Bureau, 2003; Bureau, 2004)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친가정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아동복지의 정책과 서비스 방향이 가정보호를 우선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친가정 복귀와 관련된 정책적, 실천적 대안이 미비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실상 아동보호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발달해 왔다. 미국은 약 100여년을 아동보호 중심체제로 발전시켜온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보호가 선택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미국의 경우, 부모가 생존해 있으나 친가정내에서 보호될 수 없는 아동에 대해 이미 1900년대 초부터 가정환경에서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여 대규모시설을 소규모화하거나 위탁가정에서 양육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친가정 복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족재결합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야 비로서 아동을 가정환경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국내외 아동복지 동향과 의지를 반영하여 2003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친가정 복귀와 관련된 조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보건복지부, 2007).

가정위탁보호 영역과는 달리 아동보호의 또 다른 형태인 시설보호에서는 친가정 복귀에 관한 뚜렷한 통계적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 두 영역 모두에서 친가정 복귀의 중요한 변수인 친부모와의 지속적인 관계, 접촉율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친가정 복귀가 실천적으로 강조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시설 입소 당시 부모가 있는 아동들의 41.8%가 연락이 두절되어 부모의 생존여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지 않더라도 부모와의 연계가 거의 없는 편(변용찬, 이상현, 1998)이어서 부모가 있는 아동들의 대부분이 입소를 계기로 점차 부모와의 끈이 단절되어 결국에는 시설에 장기 보호되고 있다(정영순, 2000 재인용). 가정위탁보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친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이 57.4%나 차지하여 과반수 이상이 위탁기간 중 친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7).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 시설보호와 가정위탁보호 모두 친가정 복귀를 위해서 보호아동과 친가정과의 지속적인 연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family reunification)에 관한 선행연구

보호아동이 친가정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친가정 복귀를 역동적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복귀 과정에서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관련된 조사 및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외국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친가정 복귀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 관련 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탁보호를 받는 기간(Glisson,

Bailey and Post, 2000), 보호의 형태(Courtney, 1994), 아동의 특성으로써, 연령(Courtney, 1995; Wulczyn, 2004; Hines, Lee, Osterling, and Drabble, 2007; Marm and Zielewski, 2009)과 성별, 인종, 건강문제나 장애(Marm and Zielewski, 2009; Littell, and Schuerman, 1995), 부모특성으로써 약물남용(Smith, 2003; Jones, 1998; Frame et al., 2000; Wulczyn, 2004), 경제적 상태(Courtney, 1994; Jones, 1998; Wulczyn, 2004)), 결혼 및 가족 구조, 접촉 정도(Wulczyn, 2004), 아버지의 지지(Marm and Zielewski, 2009), 부모의 안정성, 부모의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수준 그리고 일관성 있는 양육 기술(Festinger, 1996) 등을 관련요인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위험한 환경과 부적절한 주택거주(Jones, 1998), 재결합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질 (Children's Bureau, 2003) 등이 친가정 복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정리하면, 친가정 복귀 관련요인으로 보호기간이나 형태, 보호아동특성, 친부모 특성, 가정환경조건, 서비스 관련요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동보호의 책임이 있으며 가족이 재결합하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친부모와 관련된 요인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우선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궁극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Kortenkamp, Green, and Stangner, 2004). 국내 조사에서는 위탁부모들은 보호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가려면 우선, 친부모의 경제능력회복(35.5%)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의지(16.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보건복지부, 2007).

실제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아동간의 방문은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중요한 성공 예측 요인 중의 하나이다. Courtney(1994)는 아동과의 빈번한 접촉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기회를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Leathers(2002)와 Wulczyn(2004)은 위탁보호 하는 동안 어머니의 빈번한 방문이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그 어떤 요인보다도 재결합을 더욱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서 친엄마가 방문한 12세 이하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10배가 더 재결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avis, Landsverk, Newton, and Ganger, 1996; 정익중, 2009 재인용).

한편, 친부모와 관련된 문제 상황은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해 부모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것은 재결합 방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모의 약물문제, 정신건강, 주택문제 또는 한부모 상태와 같은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황으로 친가정 복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Littell, and Schuerman, 1995)고 하였다. Wulczyn(2004)은 부모특성으로 약물남용, 경제적 상태, 결혼 및 가족 구조, 접촉 정도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의 약물남용 치료 여부가 재결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는데(Smith, 2003), 약물남용의 문제가 있는 부모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더 재위탁보호를 받게 된다(Jones, 1998)고 하였다. 또한, 친가정 복귀에 실패한 28명의 아동(4~6세) 중 27명에게서 부모의 약물남용문제가 발견되었다(Frame, Berrick, and Brodowski, 2000). 또 다른 친부모의 문제상황으로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재결합의 가능성 감소와 관련있다(Courtney, 1994; Jones, 1998)는 보고가 있다. 유사한 연구로서 부모가 빈곤할수록 접촉의 기회가 낮아져 재결합할 기회가 감소한다고 보고(Courtney, 1994)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환경과 부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과 친가정 복귀 실패가 관련이 있다(Jones, 1998)고 언급하였다.

Miller, Fisher, Fetrow, and Jordan(2006)은 보호아동(4-7세)과 친부모간의 재결합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요인은 부모가 약물남용치료를 받았는지의 여부, 아동을 위한 특별한 교육서비스 수여 여부, 규율과 이웃도움의 적절한 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개입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과 상태, 그리고 양육조건을 만들어나가는 노력 등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와는 아동복지의 역사나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를 배경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한 국내 연구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양적연구로서 친가정 복귀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데 그쳐 친가정 복귀과정에 대한 맥락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중심의 질적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근거이론(Grounded Theory)방법 및 적용 적합성

본 연구는 사회적 보호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보호아동의 친부모가 경험한 세계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양한 질적연구방법 중에서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주체의 방법론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근거이론은 귀납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검증을 통해 이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자료로부터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와 과정의 결합을 통해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본 연구는 보호아동의 부모가 경험한 자녀와의 재결합의 의미, 다양한 조건, 자녀와 재결합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근거이론이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과정은 사회문화적 맥락내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기반으로 반응하고 상호작용하고 해석하고 정의내리는 과정이다. 따라서 부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심도 깊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더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보호는 사회문화적, 역사적인 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의 발생 사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과 아동보호상황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근거이론접근방법은 사회복지실천의 세 가지 주된 영역인 사정, 개입,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지식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유태균 외, 2001)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거이론방법이 적합하다고 보겠다.

근거이론방법은 Glaser와 Strauss에 의해 개발되었고 객관적인 분석과정을 강조하여 질적연구의 주관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방법으로써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나치게 실증주의

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존의 경직된 분석절차에 대한 대안으로 구성주의, 해석학적 근거이론이 제시되고 있어 근거이론의 한계에 대한 도전과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과정에서 근거이론의 고전적 방법을 활용하되 근거이론방법의 한계가 되는 주관성에 대한 수용과 좀 더 창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구성주의적, 해석학적 근거이론을 결합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Charmaz(2009)의 구성주의 근거이론방법의 기본 가정인 주관성을 전제로 하여 자료의 상대성에 대한 인정,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주관성이 필연적으로 개입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단계에서 연구자는 자녀를 사회적 보호기관에 맡기는 행위와 자녀를 친가정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친부모의 태도, 노력 등에 대한 연구자의 선이해, 관점 등에 대한 전면적 차단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인터뷰 자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점을 확장하고 선이해의 지평을 넓혀 분석과정에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경험적 자료에서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Strauss와 Corbin(1998)의 축코딩을 활용하였다. 구성주의, 해석학적 근거이론가들은 축코딩을 고정된 분석틀로 인식하여 경계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자료의 성격에 따라 자료를 정교히 분석해내는데 도움이 된다(Charmaz, 2006)는 점에서 축코딩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친부모가 행하는 전략과 조건 그리고 결과, 과정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근거이론이 유용하다는 것은 축코딩 적용을 두고 언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교한 분석과 실제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축코딩을 활용하였다. 셋째, 연구 질문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위해 Charmaz(2006)의 이론적 코딩(Theoretical coding)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축코딩과 과정분석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주들간의 연결, 상호작용, 국면의 전환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고전적 근거이론방법의 선택 코딩은 내용상 상당부분이 중복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론적 코딩은 Strauss와 Corbin(1998)의 축코딩과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융통성 있는 결합 이상으로, 좀 더 창의적 연구과정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이론적 코딩을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주제의 독특성을 부각시키고 연구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개념과 범주를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보호 아동의 친부모로서 자녀를 보호시설, 가정위탁, 그룹홈과 같은 아동보호기관에 맡긴 경험이 있고 동시에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킨 경험이 있는 기혼 남녀로 정하였다. 단, 보호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간 후 현재 1년 이상 재결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1년 이내에 재결합에 실패하여 아동이 다시 보호기관으로 되돌아간 경우는 제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복수의 보호시설을 이용하였고 '24시간 보육시설'¹⁾을 통해 자녀를 위탁했던 참여자도 포함하였다.

1) 24시간 보육은 야근이나 밤늦게 일하는 부모와 밤에 직장을 가진 부모, 한부모 가정의 아동, 부모의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방치된 아동을 위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24시간 개방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보호자는 일주일동안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주말에 귀가시키는 형태로 이용한다(여성가족부, 2006).

그리고 친가정 복귀 경험의 독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재위탁상태에 있는 친부모를 추가로 인터뷰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 가정위탁, 24시간 보육시설, 그리고 그룹홈 실무자에게 연구참여자의 의뢰를 요청하여 친부모를 소개받았다.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킨 친부모의 사례가 드물고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아 최종적으로 11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본 연구참여자의 특징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징

참여자	성별/연령(만)	결혼상태	학력	직업	주거상태	보호자녀(위탁시 연령)	보호기관(위탁기간)	재위탁 또는 연장	방문주기	재결합기간
1	여성/30대	혼인	대학 중퇴	안마소	월세	여-7세(3세) 남-5세(1월)	그룹홈(2년2월)	동기관 재위탁	한달에 2회	1년 8개월
2	남성/40대	이혼	중졸	식당관리	월세	남-9세(3세)	24보육(4년)	연장	부정기	1년 3개월
3	남성/30대	재혼	중졸	유통업	월세	여-12세(7세)	가정위탁(4년)	연장	월 2회	1년
4	남성/40대	이혼	초졸	일용직	월세	여-14세(7세) 남-11세(4세)	시설(3월) 24보육(3월)	다른기관 재위탁	부정기	6년
5	남성/40대	이혼	중졸	기능직	월세	남-11세(7세)	가정위탁(2년6월)	연장	월 4회	1년 6개월
6	여성/40대	이혼	중졸	환경미화	월세	여-9세(4세) (그외 2남)	24보육(2년)	다른기관 재위탁	월 2회	4년
7	여성/30대	미혼모	전문대졸	일용직	동생집거주	여-12세(3세) 남-11세(2세)	시설(여-1년 남-2년) 친인척위탁-2년	다른기관 재위탁	방문불가	여-8년 남-7년
8	여성/20대	미혼모	중졸	식당일	월세	여-8세(1세, 5세)	가정위탁(3년) 24보육(3개월)	다른기관 재위탁	월 2회	4년 6개월
9	여성/30대	이혼	중졸	식당일	전세	여-10세(3세, 6세) (그외여13세)	24보육(3년) 가정위탁(2년)	다른기관 재위탁	월 2회	2년 6개월
10	남성/30대	혼인	중졸	기능직	월세	여-7세(3세) 남-5세(1월)	그룹홈(2년 2월)	동기관 재위탁	한달에 2회	1년 8개월
11	남성/40대	이혼	대학원졸	식당운영	월세	남-13세(8세, 11세) 남-11세(6세)	그룹홈 큰애(3년) 작은애(4년)	큰애(동기관 재위탁)	부정기	1년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11명과의 1차~3차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를 포화시키기 위해 가급적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초기의 면접질문은 '아이를 맡길 당시의 경험은 어떠하였는가?', '아이를 데려오기까지의 경험은 어떠하였는가?', '자녀를 데려온 후의 경험은 어떠하였는가'의 큰 질문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주제로 질문하였다. 자료수집과정은 지속적인 비교와 질문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와의 면담에서 나타나는 개념을 추출하였다. 민감한 분석을 위해 연구논문 중 다른 형태의 가족재결합 경험과 비교하였고 유사한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시청²⁾하였다.

자료분석은 사건단위의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과정을 위한 코딩, 이론적 코딩(Theoretical Coding)으로 진행하였다. 개방코딩은 이론구축의 기초단계로서 많은 양의 인터뷰 자료를 축소시켜 의미를 추상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축코딩을 진행하였다. 축코딩은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범주들간의 구조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연결시켜 패러다임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근거이론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과정분석은 시간 경과에 따른 범주들간의 연결에서 더 나아가 분석된 경험의 구조를 시간차원에서 재배치하여 범주들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것이다. 과정을 통해 작용/상호작용의 순서, 본질적 변화 측면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이론적 코딩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이고 일관성있는 해석을 제시하는 단계이다(Charmaz, 2009).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원인, 맥락, 우연, 결과 조건, 정도, 범위, 상호성, 유형, 수단-목표, 반대되는 쌍 등이 있다.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개념이 그들의 경험을 얼마나 잘 반영하였는지 참여자 3인을 선정하여 질문하여 확인한 후 차이를 반영하였고 질적 연구를 진행 중인 박사과정생 2인, 연구원 1인, 교수 1인의 도움으로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절차의 충실한 이행,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이해의 차이 등을 논의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다.

4. 연구결과

인터뷰 자료를 개방코딩 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159개의 개념, 45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5개의 범주를 도출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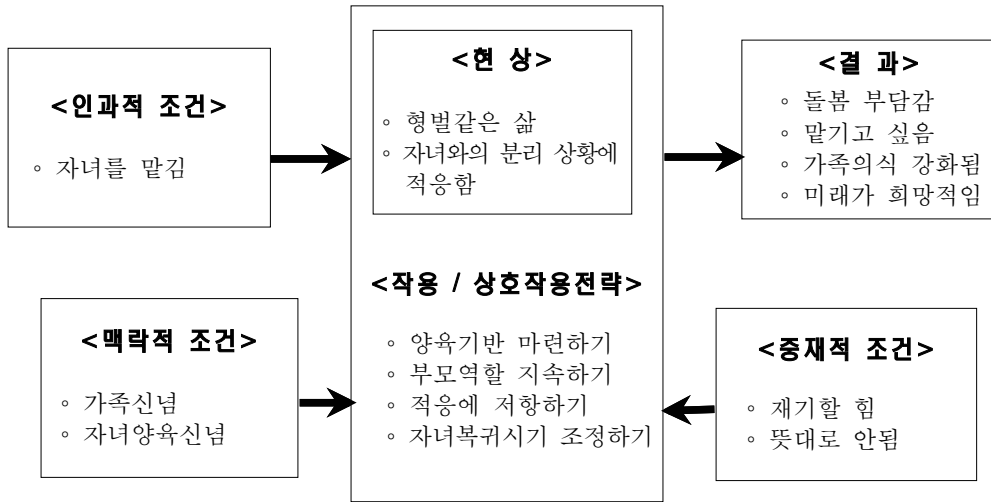
2) 현장르포 동행 '잡쌀떡 모녀' 11.01.06 : 아동쉼터(그룹홈)에 자녀를 2년간 맡겼다가 함께 살게 된 모녀 이야기

〈표 2〉 범주 및 하위범주 목록

범 주	하위범주
자녀를 맡김	잠시 자녀를 위탁함/ 부모라는 의식을 놓지 않음/ 자녀를 지켜 주지 못함/ 자녀에게 상처를 줌
형벌같은 삶	죄책감/ 압박감/ 자살시도함/ 마음이 무너짐
자녀와의 분리상황에 적응함	무더짐/ 활동이 자유로움
가족 신념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함/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좋음
자녀양육 신념	나의 부모와 다르게 살고 싶음/ 불우한 어린시절을 물려주고 싶지 않음
뜻대로 안됨	애를 써도 제자리걸음/ 자녀와의 소통에 방해받음
재기할 힘	양육책임감/ 지지를 받음/ 반복되는 헤어짐에서 힘을 얻음
양육기반 마련하기	복귀할 가정을 지킴/ 물리적 양육환경을 조성함
부모 역할 지속하기	양육상태에 관심 둠/ 맡긴 부모로서 도리를 다함/ 자녀와 접촉함/ 정기방문 규정을 준수함
적응에 저항하기	스스로 부담을 줌/ 적응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 적응에 대한 위기감
자녀 복귀 시기 조정하기	위탁 연장/ 재위탁 혹은 다른 기관 위탁 적절한 복귀 시기를 염두해 둠
돌봄 부담감	빈곤한 환경/ 자녀가 방치됨/ 버거운 시작/ 자녀의 부적응
말기고 싶음	회개가 듬/ 선택한 희생에 대한 회이
가족의식 강화됨	가족 힘을 깨달음/ 자녀의 의미가 더 소중해짐 진짜 부모가 됨/ 제자리를 찾음/ 뿌듯함
미래가 희망적임	자녀의 좋은 양육상태를 봄/ 자녀양육에 도움됨 사회를 가깝게 느낌

1)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축코딩은 개방코딩과정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는 과정이다.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간의 관련성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과정에서 친부모의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된다(Strauss and Corbin, 1998).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자녀를 맡김’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녀를 버리는 행위라고 인식되는 입양보내기, 고아원 보내기를 거부하였고 자녀를 잠시 위탁할 목적으로 대규모 보호시설이 아닌 소규모 아동보호기관을 찾았다. 자녀를 맡길 당시에는 위탁 환경을 중요시함으로써 부모라는 의식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위탁행위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고 참여자는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갖게 하였다.

고아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부모가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고아원 한번 가면은 애들이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안했었죠. 그래서 그룹홈이라는 데를 알아서 이제 가게 된 거였는데... <참여자 10>

처음에 이제 제가 데려다 주고 오던 날... (눈물흘림).. 음.. 많이 울었어요. OO이가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간다는 생각때문인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다와 가지고 차에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 참 너무 미안해서 (눈물흘림)... <참여자 2>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참여자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현상은 ‘형벌같은 삶’, ‘자녀와의 분리상황에 적응함’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위탁 직후부터는 죄인처럼 살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녀와 분리된 상황에 적응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 위탁후 자녀에게 상처 준 죄책감과 자녀를 빨리 데려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이후 자녀와의 정기 만남 때 자녀를 억지로 위탁보내야 하는, 또 헤어질 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했다.

한 일년 육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도저히.. 애 땀에 떨어져는 못 살겠더라고요. 도저히.. 그 때는 이제 완전히 죽고 싶었죠. 자살하려고까지도 했었는데.. 그냥 뭐 술먹고 도롯가에도 누워 있고.. 그냥 별거 다했죠.<참여자 10>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오잖아요. 집에. 일주일에 한번 이주일에 한번 오잖아요. 안갈려고 그래요. 아빠 저 하루만 더 자고 가면 안돼요? 그 때마나 보내는 제 마음이... 아..(침묵..눈물흘림) 정말 무너져 내립니다.<참여자 2>

그러나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 고통, 간절함이 무더지고 담담해지고 자녀와 분리되어 있는 생활의 자유로움, 일하기 편함 등과 같은 이점을 누리며 적응하게 되었다.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구요. 근데 이제 항상 머릿속에는 있지만 처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열어진다는 마음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열여져요.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얘기를 빨리 데려와야 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좀 무뎠진 거를 좀 느꼈어요.<참여자1>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건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신념', '자녀양육 신념'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모두가 불우한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자신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신념,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고 자녀에게는 부모가 가장 좋다는 신념들이 중심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전략들을 수행하는데 작용하였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준게 있으면 기억이 날텐데.. 그런 기억 자체가 없다보니까 무덤덤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그런 걸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군...<참여자 4>

이제 그 말기는 그날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정신을 빨리 차리고 그리고.. ○○이나 저나 오래 있을수록 안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 쪽 분들이 잘해주시고 그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략) 같이 항상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주는 게 그 아이들에게 최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참여자 3>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조정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중재적 조건은 '뜻대로 안됨', '재기할 힘'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형벌같은 삶에서 벗어 나려고 닥치는 대로 일하지만 현실은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 제자리 걸음의 형상이 되었다. <참여자 7>은 자녀와 소통이 제한되어 마음 무너짐의 현상이 심화되었다.

특출난 기술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뭘하든.. 그 당시에는 뭐.. 택시도 해 봤고, 대리운전도 해봤고, 근데 다 돈벌이가 뭐.. 그렇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가지고.. 뭐.. 이것 저것 뭐.. 그 당시에 적금도 들고.. 뭐 그래 봤지만은 큰 돈을 모을 순 없더라고요. 좀 모았던 돈도 또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중략) 정말 세상살기 싫었죠.<참여자 3>

난 맨날 보던 앤데 안보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갔는데 처음에는 보여줬

어요. 근데 두 번째가 세 번째 부터는 오지말래요. 왜 그러냐니까.. 애네는 분명히 엄마가 오면, 이제는 엄마가 데리고 가는 줄 알 것이다. 근데 엄마가 처음에 한번 와서 그냥 가고, 또 와서 그냥 가면, 이제 엄마가 자주 안 데리고 간다는 걸 알면 애들이 더 상처를 받는데요. 아예 데리고 갈 것 아니면 보러오지 말래요.<참여자 7>

한편, 제기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자녀양육 책임감'과 주변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물질적 지원', 그리고 자녀와의 통화 시 또는 정기만남 후 '헤어질 때 겪는 고통'이었다.

그 녀석한테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항상 (만나고 난 후) 그 돌아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빨리 내가 음.. 일어나야..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빨리 내가 일어나야 뭐.. 우리 아들과 같이 살 수 있다 라는 생각.. 항상 하고 살았죠.<참여자 2>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 (Strauss and Corbin, 1998)로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기반 마련하기', 부모 역할 지속하기', '적응에 저항하기', '자녀복귀시기 조정하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남은 가족구성원까지 분리시키지 않음으로써 자녀가 다시 돌아올 가정을 지켰고 자녀를 복귀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 즉, 월급이나 정부지원을 받아서라도 일정한 수입원을 만들었고, 거주할 공간, 그리고 자녀 돌봄에 대비하였다.

정말 이 아이가 올 때까지 다 화목함을 가정에 따뜻함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 니가 집에 와서 너무 좋다. 니가 집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런거를 보여주는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혼자자 아니고.. 나를 생각하는 우리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이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 그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참여자 6>

신용불량자로 취직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계속 이렇게 생활을 조달을 했어야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동사무소를 계속 찾아 갔었어요. 근데 수급자 혜택 계속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용직이라도 조금 이거 해 달라고.. 애들 있으니까 모든지 시켜주면 나 다 하겠다고 했었는데.. 한참 난리를 피웠어요. (중략) 겨우 이 제.. 한참 이제.. 난리를 피운 끝에 겨우 신용불량.. 그게 있어가지고 (수급자로) 올라간 거예요.<참여자 7>

참여자들은 자녀와 분리되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부모역할을 수행하였다. 전화나 정기적 만남을 통해 꾸준히 자녀와 소통하였고 <참여자 9>는 친부모로서 자녀들의 양육상태를 살폈고 기대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여 불만을 표현하였다. <참여자 5>는 부모가 지켜야 할 위탁 규정을 준수하였고, 위탁기관 또는 가정에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였다.

항상 이제 전화를 하니깐요. 그.. 〇〇이도 이제, 아빠하고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안하는 거죠. 항상 아빠는 뭐 내가 그냥...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저도 그만큼 해주는 거죠(중략) 그러니까 제가 '널 버린 게 아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구요.<참여자 3>

뭐.. 사람이 내 맘 같진 않잖아요. 그냥 생각만큼은 아니... 막 친엄마만큼 우리 딸래미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맘 같진 않지.(중략) 애가 자전거 타다 턱도 찌그러져서 꺾매주고, 여기도 멍 들어서.. 찌그러져서 썩 들어가고 ... <참여자 9>

거기(위탁기관)서 하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좀 괜찮았죠. 전화는 일주일에 저기.. 두달인가? 처음에 두달인가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마음이 흔들리니까.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 통화하는 걸로.<참여자 5>.

한편, 점차로 자녀와 분리된 생활에 적응해가는 자신을 경계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녀의 적절한 복귀시기를 조정하였다. 자녀와 분리된 상황에 적응되어, 혹은 뜻대로 안되는 현실때문에 현재의 위탁상황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자녀를 복귀시켰으나 다시 상황이 열악해져 재위탁, 혹은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의 적절한 복귀시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였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녀 스스로의 돌봄이 가능한 연령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처음에 애들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무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모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빨리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월세방을 하나 얻었어요.<참여자 1>

너무 길게 가면 안된다는 생각을 했죠. 아이들이 너무 커도 좀... 말기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도 생각하는 그런 게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 딱 좋은 거는 그냥 한 삼학년이나 사학년 때 좀 데려오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3>

제 동생이 거주지를 빌려줬었고, 또 저희 엄마가 또 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리고 왔을 때 애들이 크니까 좀 아무래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길을 알아들으니깐.<참여자 7>

마지막으로 결과는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Strauss and Corbin, 1998)으로 본 연구에서는 '돌봄 부담감', '맡기고 싶음', '가족의식 강화됨', '미래가 희망적임'이었다.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킨 당시와 그 이후에도 참여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고, 특히, 친가정 복귀 당시 자녀돌봄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방치되었다. 자녀가 복귀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거나 새로운 가정·학교환경에서 부적응문제를 보이기도 하여 돌봄 부담감이 극심하였다. 자녀의 친가정 복귀 후 가정·일의 양립 갈등에 직면하면서 혹은 자녀에게 다 해줄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녀를 데려온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역할의 과중으로 힘들 때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사무실에 최소한 5시(오전)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4시 반에서 40분에 일어나갖고.(중략) 애들은 굶죠. 거의.. 못 먹죠. 큰 애는 학교를 거의 빠지다시피 하고 힘들었어요. 막내놈은 몇 번 잃어버렸어요. 집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일나가는 것은 아니고, 생활할 정도만 해갖고 일을 나갔기 때문에 잠깐 일나갈 때, 지가 어떻게 차를 타고 나가갖고, 한번 뭐.. 서너번 잃어버릴 뻔, 찾고 했어요.<참여자 4>.

그 선생님(입양기관)이 (말씀하시길) 부모가 있어도 지원 안해줘서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난(당시 미혼모였음) 그런 사람들도 없어서 더 힘들거라고.. 그러셨는데..아.. 전 괜찮다고.. 그 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 때는 후회도 돼요. 너무 힘들 때는.. 몸도 힘들도 막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후회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저도 사람인걸라.. 힘들면은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참여자 8).

한편, 가족간의 유대가 강해져 가족, 자녀의 존재가 더욱 소중해지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부모가 된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자녀가 바람직한 성장상태로 복귀한 경우, 참여자들은 매우 희망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이웃과 사회의 도움은 희망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였다.

지금 와서 그냥.. 이런 생각을 갖는 거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아이하고 저하고 이런 관계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한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해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 <참여자 2>

참! 내가 그래도 복은 있었구나. 좋은 사람들 만나서 애들 상처받지 않고.. 그러면서 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더 빨리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식 아닌 자식어.. 이렇게 힘든데도 잘 봐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힘을 얻어야지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중략)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까지 도움을 줄려고 노력했다라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가족한테도 하기 힘든데..(참여자 1)

2) 과정 분석

과정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친부모가 자녀를 아동보호기관에서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은 첫째, 자녀위탁단계: 자녀를 위탁한 모진 부모가 됨, 둘째, 자녀위탁 후 단계: 자녀복귀위해 무너진 가정 세움, 셋째, 자녀 친가정 복귀단계: 나, 가족, 세상에 떳떳함, 넷째, 자녀 친가정 복귀 이후 단계: 재위탁 경계하며 가정지킴이다. 이 때 자녀의 친가정 복귀 단계에서 양육기반의 안정성 수준에 따라 네 번째 단계로 이동하기도 하고 다시 재위탁하게 됨으로써 자녀위탁단계로 순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자녀위탁단계: 자녀를 위탁한 모진 부모가 됨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자녀를 보호기관에 맡긴 행위가 자녀나 사회로부터 자녀를 버리는 행위로 인식되기에 자신을 자녀버린 모진 부모라고 생각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를 잠시 맡기려는 의도로 자녀양육을 위탁기관에 의뢰했지만 결국 부모로서 자녀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녀에게 가족과 분리되는 고통을 주었기에 자녀 버린 부모의 형상이 되었다. 참여자들이 자녀를 위탁하게 되는 상황은 대부분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받는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엔 자녀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이미 대부분 구조적 결손가정 상태에서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부모인 자신마저 자녀를 버릴 수는 없었다. 위탁기간이 기관에서 정해진 경우도 있었으나 참여

자 스스로 1년 또는 2년으로 계획한 점, 위탁을 결정할 때 자녀가 양육될 환경을 중요시하고 양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는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되물림, 닳기 싫었던 부모상을 경계하면서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1>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맡긴 거예요'라고 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결국 자녀를 부모로부터 억지로 떼어놓음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한 나쁜 부모가 되었다.

(2) 자녀위탁 후 단계: 자녀복귀 위해 무너진 가정 세움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자녀를 떼어놓은 죄책감과 자녀를 복귀시켜야 한다는 조급함 속에서 산산이 깨진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다. 참여자들은 삶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녀마저 분리되는, 완벽한 가족해체를 경험하였다.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하는 참여자들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은 세상을 만난다. 참여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체자리 걸음이었다.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야 했고, 자녀와 분리된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자신에게 저항해야 했다. 이것은 무너진 가족을 세우는데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었다.

자녀위탁 후 초기단계에서 참여자들의 일상은 죄책감이 깔려있다. 죄책감과 좌절감에 방황하기도 했지만 자녀를 빨리 데려와야 한다는 조급함,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재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일에 몰두했다. 참여자들이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전략은 '양육기반 마련하기'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아이를 맡기면 단기간에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지고 냉혹한 현실에서 좌절을 겪었다. 자녀를 맡긴 상태에서의 사회적 실패는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경험하게 했다. 이 때 참여자들이 활용했던 '부모역할 지속하기' 전략은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다시 양육기반 마련하기에 주력하도록 만들었다.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부모 역할 지속하기'였다. 주로 위탁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관에서 정하는 정기적 방문 규칙에 따랐다. 대부분 한달에 1번~4번의 만남을 갖고 전화통화는 비정기적으로 더 자주 이뤄졌다. 정기만남은 참여자들과 자녀에게 그리움에 대한 해소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는데 이것은 친부모에게 재기할 힘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때 만남이 제한되어 그리움에 사무친 참여자들은 오히려 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또한, 참여자들 중 만남에 소요되는 비용마련이 어려워 만남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녀위탁 이전처럼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위탁규정을 준수하고 자녀양육상태를 살폈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부모역할 수행을 통해서 자녀, 위탁기관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였다.

자녀위탁 후 약 1년이 지나면 자녀를 복귀시키는 것에 대한 간절함, 부모로서의 의무감이 약해지면 서 위탁 이전의 평정심을 찾는 등 자녀와 분리된 생활에 적응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자녀가 잘 성장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자녀를 맡긴 것에 대한 편안함을 갖는 것은 양육기반 잡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러한 적응적 변화는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적응에 저항하기'와 '부모역할 지속하기'이다. 특히, 자녀와의 정기적 만남은 친가정 복귀에 대한 자극

제가 되었다. 한편,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참여자들은 적응단계를 경험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물리적 양육기반이 준비된 정도에 따라 자녀들의 적절한 복귀시기를 고려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준비하는 자녀의 친가정 복귀를 위한 기본 요건은 ①거주지 마련, ②생계를 위한 직장 구함, ③양육대안 마련 또는 자기관리가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될 때를 기다림 등이었다. 계획과는 달리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자녀와 분리된 상황에 적응한 경우 위탁을 연장하였고 위의 기본 요건의 준비 정도를 평가하면서 적절한 복귀시기를 염두해 두고 있었다.

(3) 자녀 친가정 복귀 단계: 나, 가족, 세상에 떳떳함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경험은 가족 원형(原形)을 복구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부모로서의 자신, 자녀를 포함한 가족, 세상에 떳떳했음을 의미한다. 옥죄었던 마음이 해방되고 부모로서의 도리를 했다는 만족감, 뿌듯함을 느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이전 단계의 양육기반 마련하기에 몰두해서 양육환경을 마련한 후 자녀를 복귀시킨 참여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주로 '자녀 복귀시기 조정하기' 전략을 활용하였다. <참여자 4>(위탁기간: 6개월)를 제외하고 참여자들은 2-4년 동안의 위탁을 종료하고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켰다.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데 이전 단계의 '부모역할 지속하기' 전략이 유용하였다.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자녀가 친가정 복귀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친가정 복귀를 촉진시키는 '재기할 힘'이 강화되었다. 참여자들이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킬 때 물리적인 양육기반이 마련된 경우도 있었으나 양육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움이나 죄책감,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동기로, 혹은 양육상태에 대한 불만을 느껴 데려오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는 재위탁을 통해 자녀위탁단계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이들이 위탁한 기간은 2개월~1년이다. 참여자들은 기관이 부모의 돌봄보다 질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되었을 때 복귀시기를 늦추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으면 양육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위탁의뢰를 중단하였다.

(4) 자녀 위탁 이후의 단계: 재위탁 경계하며 가정지킴

자녀의 친가정 복귀 이후에도 위탁 당시 상황과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은 경제적 불안정, 양육부담을 느끼지만 이전보다 강해진 가족의 힘, 자녀의 긍정적 양육상태와 주변의 도움에 희망을 느끼며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들은 자녀의 복귀를 위한 세 가지 기본 요건 중에서 생계를 위한 직장과 양육대안 마련에서 불안정성과 미흡함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자녀를 복귀시킬 당시 경제 수준은 자녀를 맡기기 이전과 비교할 때 비약적 호전은 없었다. 여성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도 양육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일 정도로 여전히 빈곤하였다. 빈곤으로 인한 자녀 방치 상태나 자녀의 부적응 문제 발현은 참여자들의 돌봄 부담감을 가중시켰다. 결과적으로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킨 이 후에 참여자들의 삶에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생활에서 또 다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고단한 삶을 되돌아볼 때 자녀를 복귀시키는 결정을 한 '선택한 희생'에 대해 후회

하기도 하였다. 또 다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참여자들은 재위탁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위기감을 느꼈다. 한편, 자녀가 좋은 양육상태로 복귀한 경우나 자녀의 부적응문제에 대한 주변의 도움은 돌봄 부담감을 느끼는 참여자들에게도 희망적인 부분이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욱 힘이 강해진 가족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이라는 힘겨운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족의 힘, 자녀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모로서의 성숙을 경험했다.

3) 이론적 코딩

이론적 코딩은 핵심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화해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적인 해석을 하는 단계이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이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경험은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립되는 경험간의 경계에서 느끼는 긴장상태를 중심 축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해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자녀를 보호기관에 잠시 맡겼으나 결과적으로 자녀버린 부모가 된 경험이고 둘째, 자녀를 분리시킨 죄책감을 갖고 자녀 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형벌같은 삶을 경험하면서도 점차로 형벌같은 삶에 적응하여 자녀양육의지가 약해지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험이다. 그리고 셋째, 자녀를 복귀시킨 것에 대한 떳떳함과 불안정한 가정 내·외부적 양육환경으로 인해 자녀를 복귀시킨 것에 대한 회의감이 공존하는 것이다.

(1) 자녀를 맡김 대 자녀버린 부모가 됨

자녀를 보호기관에 맡기는 상황에서의 긴장관계는 자녀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었던 형편에 놓여 일정 기간 보호기관에 맡겼던 의도와는 달리 자녀를 버린 부모가 되어버린 형국으로 인해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됨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행위는 지금의 형편보다 나은 양육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자녀에게 최고의 환경은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의 신념과는 위배되지만 장기적으로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가족의 분리라는 희생적 과업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자녀를 맡길 당시와 맡긴 이후에도 부모역할을 지속하는 것은 자녀를 맡길 의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가족과의 강제적인 분리로 자녀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고 자녀 스스로가 부모로부터 버려졌다고 인식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였다. 세상도 자녀를 보호기관에 맡긴 부모를 자녀를 버린 부모로 규정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맡겼다가 결국 복귀시키지 못하는 부모가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도 질문해 본다. '내가 정말 아이를 다시 데려갈 수 있을까'〈참여자 2〉

(2) 형벌같은 삶 대 적응하는 삶

자녀를 위탁한 후부터 참여자들은 죄인의 생활을 하면서 죄책감에 눌러 살지만 점차로 자녀와 분리된 생활에 적응해간다. 자녀를 가족으로부터 떼어놓은 부모는 웃어도 안되고,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안되고, 즐겁게 살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며 행복이 통제된 틀에 갇혀 산다. 그리고 가족이 흩어진

상실감으로 방황하기도 했고 자녀를 데려와야 한다는 조급함, 압박감으로 일에만 집중하기도 했다. 이렇듯 형벌같은 삶은 제한된 기한이 없지만 해방되는 길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자녀를 복귀시키는 방향과 형벌같은 삶에 적응하는 방향이다. 자녀를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참여자들은 형벌같은 삶에 대한 불편함, 부적응이 동인이 되었다. 한편, 점차로 자녀를 맡긴 생활에 적응한 참여자들은 정기적 만남에서 자녀와의 헤어짐에 대한 느낌도 무덤덤해지고 고통이 감소되는 일상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자녀를 복귀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희석되었다. 이렇듯 변화하는 자신의 적응적 행동을 인식한 참여자는 적응을 경계하였다. 자녀와 분리된 삶에 적응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주변으로부터 받거나 스스로 위기로 받아들였다. 참여자들은 형벌같은 삶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녀를 복귀시켜야 한다는 생각과 자녀와 분리된 생활에 적응함으로 인해 양육의지가 약해지는 모순적 상황 사이에서 긴장상태를 경험하였다.

(3) 떳떳함 대 회의감

참여자들은 자녀를 복귀시킨 후 부모로서 자신, 자녀, 세상에 대해 떳떳함과 복귀시킨 것에 대한 회의감의 공존 속에서 갈등하였다.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킨 것이 자발적 선택이었건, 외부의 권유에 의해서건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모로서의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자녀 복귀 후 현실적 어려움, 부모로서 뒷받침해 주지 못한 좌절감을 겪게 되었고 돌봄 부담감에 봉착하면서 친가정 복귀가 자녀에게 최선이었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양육환경 준비정도에 대한 후회, 친가정으로 복귀시킨 것이 좋은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회의, 자신을 희생한 선택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 미혼모인 경우, 자신의 희생적 선택에 대한 회의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 고달픈 일상, 불안정한 생활기반에서 오는 불안감, 재위탁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후회, 회의는 과거에 힘들었을 때 선택했던 대안 즉, '자녀를 맡김'을 떠올리게 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이 보호기관으로부터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친부모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친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후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과적 조건은 '자녀를 맡김'이 도출되었고, 현상은 '형벌같은 삶', '자녀와의 분리상황에 적응함'으로 나타났다. 이에 맥락적 조건은 '가족 신념', '자녀양육 신념'이며, 중재적 조건은 '재기할 힘', '뜻대로 안됨'이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양육기반 마련하기', '부모 역할 지속하기', '적응에 저항하기', '자녀복귀시기 조정하기'로 나타났다. 결과로는 '돌봄 부담감', '맡기고 싶음', '가족의식 강화됨', '미래가 희망적임'이 도출되었다. 과정분석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① 자녀위탁단계: 자녀를 위탁한 모친 부모가 됨, ② 자녀 위탁 후 단계: 자녀복귀위해 무너진 가정 세움, ③ 자녀 친가정 복귀 단계: 나, 가족, 세상에 떳떳함 ④ 자녀 친가정 복귀 이후 단계: 재위탁 경계하며 가족지킴으로 구분되었고 보호아동의 친부모들은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기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친부모를 대상으로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나타난 보호아동의 친부모의 경험은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아동 복지전문가들의 심층적 이해에 유용할 것이며 특히,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친부모들의 강점을 파악하여 이를 강화하는 개입 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에서 발견된 참여자들의 강점은 자녀를 맡긴 상황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부모역할을 꾸준히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참여자들의 보호기관 선택, 위탁규정 준수, 자녀 양육상태 파악, 양육상태에 대한 불만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위탁 개시부터 종료 이후의 전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선택과 전략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불우한 어린시절 경험으로 형성된 가족과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이었다. 따라서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친부모들의 부모역할하기와 가족과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고 지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친부모들이 보호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위탁규정을 준수하도록 원칙을 제시하며, 자녀양육상태에 대한 불만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친부모에 대한 실무자의 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모-실무자간 연결성을 전제한다. 친부모들은 아동보호기관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였고 이것은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촉진하는 통로가 되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친부모에게 정기적 연락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연결성을 갖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친부모들의 강점을 강화하는 개입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친부모와의 정기적 만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과의 빈번한 접촉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Courtney(1994), Wulczyn(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정기적 만남을 통한 부모-자녀와의 접촉은 다양한 의미가 있었고 만남 이후에 수반되는 헤어짐은 친가정 복귀를 촉진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 만남은 자녀를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 자녀의 성장과정을 지켜봄, 부모-자녀관계 유지, 그리움 해소, 자녀의 친가정 복귀 희망여부 확인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정기적 만남 후 헤어짐은 자녀를 또 보낼 수밖에 없는 아픈 현실에 직면하게 하여 고통스럽지만 양육의지 강화, 재기할 힘으로 작용하여 양육기반 마련에 몰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기만남은 기관의 특성, 운영자의 특성에 따라 장려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를 맡긴 직 후에는 자녀의 적응을 위해서 만남을 자제했고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난 후 정기적 만남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보호기관에 있는 실무자들은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친부모-아동간 정기만남을 일관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위탁 직 후 궁핍한 상황에서 자녀를 방문해도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자녀 위탁 초기에는 참여자들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만남을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친가정 복귀를 돕는 개입은 친부모의 경험의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과정분석 결과, 자녀를 맡긴 후부터 친가정으로 복귀시키기까지의 친부모의 경험은 단계로 구분되었다. 초기에는 죄책감, 압박감, 조급함으로 죄인의 삶을 살면서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생활기반 마련에 집중하지만 자녀위탁 후 1년쯤 되면 자녀와 분리된 생활에 적응하였다. 이러한 적응은 자녀 위탁기간 연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때 참여자들은 스스로 적응에 저항하는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주변과 실무자에 의해 자녀 복귀를 권유받음으로써 자신의 적응기를 중단하고 자녀를 복귀시켰다. 만약 적응하는 기간이 연장되면 자녀의 친가정 복귀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단계별 특성에 따라 친부모에게 나타나는 정서적 변화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실무자가 자녀 양육의지가 약해지는 적응단계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자녀위탁기한 계약, 자녀 친가정 복귀 권유 등을 통해 개입함으로써 양육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위탁종료를 결정하기 어려워 위탁이 장기화되는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

넷째, 자녀위탁과 종료 그리고 재위탁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탁종료 조건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긍정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 친가정 복귀가 이루어져야 하는 전제조건은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양육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친가정복귀를 위해 아동의 친가정 복귀 조건에 대한 규정마련과 심사, 적절한 복귀시기 결정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녀의 친가정 복귀결정에 주로 부모의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에 따라 적절한 자녀양육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복귀시킬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양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움, 죄책감과 같은 심리적인 이유, 보호기관에 대한 불만으로 자녀를 복귀시킨 경우, 자녀를 다시 방치하게 되거나 자녀의 부적응, 문제행동이 심각하게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 때 친부모들은 자녀의 문제해결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게 되어 자녀를 재위탁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했다. 따라서 실무자는 자녀의 친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복귀의 사유와 준비정도에 대해 사정해야 한다. 실무자는 자녀를 복귀시키는 결정에 앞서 적절한 자녀양육환경과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후 복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복귀 후 자녀방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로 인한 재위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친부모의 양육기반 구축을 위해 가족중심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친부모들은 자녀위탁 후, 자녀 친가정 복귀 후에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와 미흡한 양육대안으로 결국에는 또 '맡기고 싶음'이 나타났다. <참여자 10>은 자녀를 친가정으로 데려왔으나 자녀가 위탁 때보다 열악한 교육적, 의료적 환경에 놓이게 됨으로써 부모로서 죄절감과 죄책감을 느꼈고 이는 회의감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보호아동의 친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필요한데 위탁 후에는 부모의 자립, 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제공, 심리적 지지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친가정 복귀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필수적으로 하되, 해당 지역사회에 위치한 복지기관과 연결하여 아동의 양육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돌봄서비스, 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여섯째, 보호아동이 안정되고 일관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보호계획과 배치가 필요하다.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킨 친부모들은 다양한 아동보호체계를 이용함에 따라 자녀들이 여러 보호기관을 옮겨 다니며 양육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4>는 보육원과 어린이집의 24시간 탁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참여자 9>는 어린이집의 24시간 탁아 프로그램과 가정위탁을 이용하였다. 가정형편이나 기관의 사정, 기관에 대한 불만으로 복귀시켰다가 재위탁하거나 다른 형태의 보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들은 낯선 환경에 맡겨져 적응하도록 강요되었다. 아동

의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한 유해성은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아동이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보호기관에서 양육되지 않도록 부모의 세밀한 욕구파악과 그에 적절한 형태의 보호기관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자녀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친부모들이 자녀를 위탁하는 상황은 한부모 가족, 거주지가 없거나 고시촌과 같은 자녀 양육에 부적합한 주거 환경, 수입원이 전무하거나 자녀양육과 일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친부모는 자녀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녀에게 지금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기관을 찾았다. 결과적으로 자녀위탁결정은 자녀 중심적 선택이었다. 친부모들은 가까운 친인척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가족의 붕괴, 자녀와의 분리는 극단적인 정서적,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친부모에게 자녀위탁과정은 매우 고통스런 경험이고 아픈 상처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은 자녀를 맡긴 친부모를 자녀를 버린 모진 부모, 나쁜 부모로 인식한다. 친부모를 향한 세상의 부정적 시선이 친부모에게 이중적 고통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선불리 자녀를 데려와 방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가 자녀를 위탁하는 친부모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성공적인 친가정 복귀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짐으로써 친부모들의 입장에서 자녀위탁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자녀위탁행위는 해체된 가정이 복구되는 전체 과정 중의 일부라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친부모들을 자녀의 친가정 복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의 자녀가 초등학교 이하 연령대로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들을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경험과는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는 실무자 인터뷰와 보호청소년의 친부모 1인 인터뷰를 통해 보호청소년의 경우, 그 경험이 매우 이질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차기 연구에서는 보호청소년의 친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친가정 복귀의 성공·실패요인, 보호유형의 특성별로 경험적 차이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민·정익중. 2009.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4): 93-120.
- 변용찬·이상현. 1998. "아동복지 수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7.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1-575.
- _____. 2010. "연도별 요보호 아동 조치현황".
- 유태균·이선혜·서진환 역. 2003. "사회복지 질적연구 방법의 이론과 활용". Sherman, E., and William J. Reid. 1994.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서울: 나남.
- 전광현·순덕기·이숙영. 2006. "24시간 보육시설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 정영순. 2000. "시설보호아동의 가족재결합 촉구방안". 『한국아동복지학』, 9: 247-262.

- 정익중. 2009. "가정위탁 내 친가정 복귀의 현황과 과제". 2009년 제3회 가정위탁정책세미나. 『2009 가정위탁보호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pp. 49-75.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9. "2008년 가정위탁현황". <http://www.fostercare.or.kr/>.
- 통계청(2007).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 KBS 1 TV. 현장르포 동행 제139화, "잡쌀떡 모녀". 2011.01.06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CA: SAGE Publications.
- Children's Bureau. 2003. "Adoption and foster care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 Preliminary FY 2001 estimates as of March 2003".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06. "Family reunification: What the evidence shows". Children's Bureau,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Courtney, M. E. 1994 . "Factors associated with the reunification of foster children with their families", *Social Service Review* 68: 81-108.
- _____. 1995. "Reentry to foster care of children returned to their families". *Social Service Review*. 69: 226-241.
- Davis, I. P., John L., Rae R. N., and W. Ganger. 1996. "Parental visiting and foster care reunific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8(4/5): 363 - 382.
- Festinger, T. 1996. "Going home and returning to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8(4): 383-402.
- Frame, L., J. D. Berrick, and M. L. Brodowski. 2000. "Understanding reentry to out-of-home care for reunified infants".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n*. 79: 339-369.
- Glisson, C., J. W. Bailey, and J. A. Post. 2000. "Predicting the time children spend in state custody". *Social Services Review*. 22: 253-280.
- Hines, A. M., Peter A. L., Kathy L. O., and L. Drabble. 2007. "Factors Predicting Family Reunification for African American, Latino, Asian and White Families in the Child Welfare System". *Journal of Child family Study*. 16: 275-289.
- Kortenkamp, K., R. Geen, and M. Stagner. 2004. "The role of welfare and work in predicting foster care reunification rates for children of welfare recipi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6: 577-590.
- Jones, L. 1998. "The social and family correlates of successful reunification of children in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 305-323.
- Leathers, S. J. 2002. "Parental visiting and family reunification: Could inclusive practice make a difference?". *Child Welfare*. 81: 595-616.
- Littell, J. H., and J. R. Schuerman. 1995. "A Synthesis of research on family preservation and family reunification programs". Rockville, MD: Westat.
- Malm, K. E., and Erica H. Zielewski. 2009. "Nonresident father support and reunification outcomes for children in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 1010-1018.
- Miller, K. A., P. A. Fisher, B. Fetrow, and K. Jordan. 2006. "Trouble on the Journey home: Reunification failures in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 260-274.
- Rennie, D. L. 2006. "Embodied categorizing in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eory and Psychology*.

16: 483-503.

Smith, B. 2003. "How parental drug use and drug treatment compliance relate to family reunification". *Child Welfare*. 82: 335-366.

Strauss, A. L. and J. M. Corbin.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and Procedures for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The AFCARS Report: Preliminary FY 2003 estimates as of April 2005". 10. Washington, DC: Author.

Wulczyn, F. 2004. "Family reunification. The future of Children: Children". *Families and Foster Care*, 14(1): 95-113.

A Study on the Birth Parent'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Family Reunification for Children in Social Care

Kim, Ju-Hyun

(Kyung-Hee Cyber University)

Using grounded theory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in-depth interviews with 11 parents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in order to find out how the experience of the parents on the process of the children's family reunifi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leaving one's child' that composed causal conditions, and also it was 'sentenced life' and 'adapting to a life without child' that composed existing conditions. Thus, the contextual condition was found out as 'a belief of family' and 'a belief of child caring' and the mediation conditions were 'power to recover' and 'not being as one's intentions'. Also, reaction/interaction strategies turned out as 'preparing a basis of child-care', 'playing a parent', 'standing against being adapted' and 'adjusting as their children back to family'.

Finally, the analysis showed 'burdens on caring', 'wanting to leave one' child again', 'having stronger family membership' and 'being hopeful in a future' as results. The specific levels of the process were found out as following 4 steps, as time goes by. 1)Fostering children at institutions: become harsh parents(or a harsh parent), 2)After fostering: rebuild collapsed family in order to take the children back, 3)Family reunification: become aboveboard to oneself, family and the world, 4)After family reunification: try to keep the family taking precautions against resending. While taking their children back, the parents turned out to experience long, unremitting tension. Reflecting results of the analysis above, and in order to promote sending institutionalized children back to their families this article suggests practical alternatives for parents who left their children in institutions.

Key words: Institutionalized children, Family reunification, Grounded theory method

[논문 접수일 : 11. 11. 04, 심사일 : 11. 11. 10, 게재 확정일 : 11. 12. 29]